

서울시골프협회 전문선수(경기인) 등록 절차

이용 방법	2022년 3월 1일 경기인등록시스템 개편으로 스포츠지원포털 사이트의 이용 방법이 본인인증에서 회원가입(최초 1회 본인인증) 후 로그인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. *2022년 2월 28일 이전 등록자는 회원가입 필요
(신설)소속팀 온라인신청	소속팀이 검색되지 않는 경우, 선수가 스포츠지원포털사이트에서 직접 “전문체육팀 신청”을 할 수 있으며, 시도협회 1차 승인과 대한골프협회 최종 승인 후 선수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.

- 경기인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**매년 협회에 등록해야 하며**, 경기인등록규정 제12조(등록 결격사유)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기간 동안 경기인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.
- 개명자의 경우 개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)를 각 시도 협회로 제출하여 변경 후 등록할 수 있습니다.(서울시골프협회 팩스 02-490-2930)
- 등록 안내

구분	전문선수
등록 기간	1.1. ~ 5.31 *상급학교 진학생은 최종학년도 졸업 이후 등록하며, 12세이하부와 골프 종목 최초 등록자는 수시등록
등록 방법	① 스포츠지원포털(g1.sports.or.kr) → 로그인 → 경기인 등록 → 골프 → 경기인(선수, 지도자) 선택 → 신청서 작성 → 신청서 제출(저장) ★신청서 작성시, 온라인 교육이수(스포츠인권, 도핑방지)와 스포츠인권서약서 서약동의는 필수이며, 신상정보 및 소속팀 정보 중 필수(*) 항목만 입력(*표시가 없는 항목(팀 입단일, 세부종목, 학력정보 등)은 입력하지 않음) ② (전문선수만 해당) 등록비 결제 ③ 신청서 출력
제출 서류	선수등록신청서(개인별 카드) ※ 선수등록신청서에는 소속단체장 직인 날인 필수
제출 방법	파일 업로드 *업로드 : 스포츠지원포털 로그인 → 경기인 등록 → 골프 → 선수 → 전문체육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선수로 등록합니다 → 신청정보 확인/수정 → 소속팀정보 → 선수등록신청서 업로드 → 파일첨부 *이적동의서 제출 대상자는 이적동의서도 함께 업로드
승인 절차	시도골프협회 1차 승인 → 대한골프협회 최종 승인

4. 등록절차

1단계(본인)	스포츠지원포털(gl.sports.or.kr) → 경기인 등록 → 골프→ 선수 → 전문체육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선수로 등록합니다. → 신청서 작성 → 신청서 제출(저장) → 전문선수 등록비 결제 →신청서 출력 *신청서 작성시, 온라인 교육이수(스포츠인권, 도핑방지)와 스포츠인권서약서 서약동의는 필수이며, 신상정보 및 소속팀 정보 중 필수(*) 항목만 입력 (*표시가 없는 항목(팀 입단일, 세부종목, 학력정보 등)은 입력하지 않음)
2단계(소속단체)	선수등록신청서(개인별카드)에 소속단체장 직인 날인 *개인도장 불인정
3단계(본인)	직인 날인 된 선수등록신청서를 등록시스템에 업로드 *업로드:스포츠 지원포털(gl.sports.or.kr) 로그인 → 경기인 등록 → 골프 → 선수 → 전문 체육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선수로 등록합니다. → 신청정보 확인/수정 → 소속팀정보 → 선수등록신청서 업로드 → 파일 첨부 *이적동의서 제출 대상자는 이적동의서도 함께 업로드(필수)
4단계(서울시골프협회)	1차 등록 심사 및 전산 승인
5단계(대한골프협회)	최종 등록 심사 및 전산 승인 (선수번호 부여)
6단계(서울시골프협회 년회비납부)	초,중,고등,대학부 1인당 50,000원 선수 등록후 년회비를 납부한 선수만이 서울시골프협회 주최 대회에 출전할 수 있습니다.[입금계좌:우리은행1005-401-258001/예금주:서울특별시골프협회] ※입금시 선수명/학교명으로 입금
7단계(초등·중고연맹 대학연맹 등록)	각 연맹에서 개최하는 대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선수는 대한골프협회 최종 승인 후 부여 받은 선수번호로 각 연맹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.

나. 소속단체(팀)이 변경된 경우, 반드시 이적동의서와 등록신청서(개인별카드)를 함께 제출합니다.

- 이적동의서 서식은 대한골프협회 홈페이지(경기인정보 → 이적신청)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.
- 12세이하부 및 동일 시·도 안에서 진학·전학하는 중·고등학교 소속의 전문선수, 19세이하부 전문선수가 대학에 진학할 경우는 이적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.
- 선수의 각종 대회 참가는 해당 대회 개시일을 기준으로 해당 학교의 재적기간(스포츠클럽, 기타 단체는 등록기간)을 적용하여 2개월 미만인 자는 대회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. 다만, 각급학교 1학년 또는 소속단체 1년차와 해외 유학한 사람이 원 소속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3월말 기준 소속으로 대회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.(※대한체육회 주최인 소년체전과 전국체전은 별도의 대회요강을 따릅니다.)

다. 전문선수는 등록시스템 최종 승인 완료 후 대한골프협회, 시도골프협회, 산하연맹 주최·주관 대회에 참가 가능합니다.